별첨 4 (연대보증인)

대부보증 표준약관

표준약관 제10061호 (2014. 9. 19. 개정)

대부업자는 채무자·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대부거래계약서와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★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 ★ 특히, 연대보증은 본 계약서 제1조에서 약정한 "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"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. (별지 "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"참조)

대부업자 상호 또는 성명 주식회사 위펀딩대부
대부업 등록번호 2018-대부업-1358
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1502호
전화번호 02-508-7006

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김[redacted]
주민등록번호 [redacted]-1
주 소 서[redacted]
전화번호 010-[redacted]

보증인(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채무자가 상기 대부업자(이하 "대부업자"라 한다)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(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),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제출한 다음 제1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.

제1조(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)

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.

채 무 자	성 명 : 김 마[redacted] 주 소 : 경기도 남양주시 연평리 128번지.
거 래 약 정	「2018년 6월 19일자」 대출약정서
채 무 금 액	금 [삼백오억]원
상 환 기 일	첫 대출실행일로부터 [18]개월
이 자 율	연 16.5%
지 연 배 상 금	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(24)%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.